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2호”를 “제19조의16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3호”를 “제19조의16제3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19조의14”를 “제19조의16”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4호”를 “제19조의16제4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9조의14제4호”를 “제19조의16제4호”로 한다.

제24조의6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으로 하고,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제6조13제1항제1호”를 “제6조의13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외의 본문 중 “제6조13제1항제2호”를 “제6조의13제2항제2호”로, 같은 항 단서 중 “산정기관”을 “산정기간”으로 하며, 제5항 중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제1호 중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를 “0.8%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

수수율 이하”를 “1.3%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별표 1의3 제1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나.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별표 4 제4호 단서 중 “이 경우 특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켜야 함”을 “이 경우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하며, 특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켜야 함”으로 한다.



제11조의2(주택담보대출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 취급시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14에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3>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충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등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조(위험관리체제)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회계처리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제11조의2(주택담보대출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 -----  
-----  
-----  
----- 제19조의16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험관리체제) ① -----  
----- 제19조의16제4호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처리등) ① -----  
----- 제19조의16제4호 -----  
-----  
-----  
-----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생략)

② (본문 생략)

1. ~ 2. (생략)

3.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3년 -----  
-----  
-----  
-----



료율 이하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  
하고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  
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  
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  
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다.

③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  
금융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직  
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인터  
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일  
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2. -----  
----- :  
1.3% 이하

②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  
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  
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  
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  
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  
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  
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  
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연 락 처

(02) 2156 - 9853